

다자간 투자협정이 우리 나라 해운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이태우* · 이수호** · 손애휘***

Expected Impacts of MAI on Ocean-going Shipping Companies in Korea

Tae-Woo Lee · Soo-Ho Lee · Ae-Hwi Soh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ome expected impacts of the 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m) on Korean shipping companies and to suggest the strategies to deal with the increasingly competitive international shipping market as the MAI comes into force.

The MAI is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 which includes provisions for a high-level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protection, and an effective procedure for disputes settlement. It is expected to bring about substantial changes in competitive conditions and investment environment for Korean shipping companies. While Korean shipping companies may be helped by being able to tap on foreign funds and off-shore shipping finance, they will face a tougher competition from foreign shipping companies allowed to make investment and participate in domestic shipping markets.

The Korean government is recommended to overhaul the present system of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against the domestic shipping industry. On the one hand, larger shipping companies should make efforts to intensify their global operation, and smaller companies should also broaden their operation to niche market and form a closer cooperative network to cope with a new market environment.

*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부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1. 서론

UR(우루과이 라운드)이 종결되고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투자에 대한 '다자간 투자규범'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자간 투자규범이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참여하고(다자성), 투자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며(포괄성), 구속력을 갖는(구속성) 국제투자규범을 의미한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은 국제투자에 관한 협정으로 투자 자유화, 투자 보호 및 분쟁해결절차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MAI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범위, 자유화의 수준, 분쟁해결 등에 있어 기존의 규범들보다도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UR이나 WTO 못지 않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MAI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해운기업에 기대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MAI의 주요 내용

범세계적 수준에서 국제직접투자가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¹⁾ 각국 경제의 개방도가 점차 높아지고 경제통합이 진행되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도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시대가 왔다. 기업은 생산요소나 경영기법, 무역연계 등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라면 국경에 상관없이 활용하고 추구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국의 민영화에 외국기업의 참여 허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의 추가적 직접투자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직접투자의 확대는 양자간 투자협정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으며 다자간 투자규범의 출현을 촉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양자간 협정의 수는 160여개국 사이에 1,100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약 50여개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OECD에서는 1961년 결성 당시부터 직접투자에 대한 OECD내의 규칙을 성립시켜 나갔다. 1991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기존의 OECD 투자규범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와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의 양위원회는 보다 광범위한 투자수단(Wider Investment Instrument: WIT)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1994년 각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1994년 각료이사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MAI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양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세부검토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1995년 5월 제3차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1) 황진우(1997), 'OECD 다자간 투자협정과 우리의 대응', 한화경제 5월호, 한화경제연구원, p. 24.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MAI협상은 OECD 회원국 및 EU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협상그룹에 의해 주관되고 있으며 1997년 5월 OECD 각료이사회까지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영화 등 특수항목, 분쟁해결 절차 등 잔존이슈와 노동 및 환경관련사항 등 정치적 상황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으로 각국이 제출한 유보안을 놓고 1997년 10월 이후에 OECD회원국간 협상이 진행되어 1998년 5월 이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MAI가 타결되어도 각국 국내법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MAI가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1999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 정부는 OECD가입이 확정된 1996년 12월부터 MAI 협상의 정회원으로 참석하였다. 재정경제원에서는 1996년 8월부터 MAI에 대비하여 'MAI 대책반'을 구성하여 논의 동향의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주요 연구소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MAI 민간대책반'을 설립하고 1997년 8월에 첫 회의를 가졌다. 이는 MAI협상에 대해 민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데 뜻이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전문성 제고로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MAI는 그 발효시기와 상관없이 우리 기업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왜냐하면 MAI는 국가간에 투자장벽을 없애고 국내 시장이 개방되어 외국과의 경쟁을 가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양자간 투자협정과 다자간 투자협정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양자간 투자협정'은 두 국가간 상호간의 투자 증진 및 투자 보호를 목적으로 쌍무간에 체결하는 협정이며 흔히 투자보호협정이라고 불리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해외투자는 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투자유치국의 정치, 경제상황 등에 따른 이른 바 비상업적인 위험요소까지 수반한다. 따라서 양자간 투자협정은 계약당사국들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유치국의 주권 행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투자의 내용, 내국민대우, 그리고 송금에 있어 일반적으로 양자간 협정은 국내법의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양자간 협정의 기본적인 약점은 이 협정이 단지 2개국에서만 적용되는 협정이라는 것이다. 양국체제보다는 다자체제내에서 보다 확실한 투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국제투자에 대해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규제조치들을 철폐하기 위해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범위는 외국의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계약권, 지적재산권, 청구권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이동까지 포괄하고 있다.

투자보호수준은 국내기업에 대한 대우 이상으로 외국인투자라는 이유로 국내기업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국민대우'가 보장된다. 이는 국제투자규범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어떤 투자규범도 내국민대우를 절대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다자간 투자협정에 가입한 어떤 나라의 투자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했을 경우 똑같은 대우를 다른 모든 가입국의 투자에 보장해야 하는 '최혜국대우'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영기업 등의 민영화에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외국인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해 일정률의 국산부품 사용 또는 수출비용 등의 이행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외국인투자자 개인이나 기업까지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차별시정(원상복귀)은 물론 차별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 패소한 정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기대수익에 대해서까지 금전적인 보상을 의무화하여 가장 강력한 분쟁해결절차까지 갖추고 있다.

따라서 다자간 투자협정은 단순한 시장개방 이상의 의미다. 특정국가의 시장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와 달리 다국적기업들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자본과 노동력, 원자재와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합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다자간 투자협정은 OECD와 독립된 조약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이 협상은 OECD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협정의 제정 후에는 OECD와 형식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국제조약이 될 것이다.

<표 1> MAI 협정문 초안 주요내용

부 문	내 용	
협상지침	투자보호, 투자자유화, 분쟁해결	
투자자 및 투자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투 자 자	자연인, 법인, 법에서 정한 단체
	투 자	기업, 주식 등 지분에 대한 권리, 채권·사채·융자 등 기업의 부채, 각종 계약상의 권리, 대금 및 이행 청구권, 지적재산권, 면허·인가·허가, 기타 유무형 동산·부동산, 임대·저당 유치에 의한 권리, 순수 금융투자, 정부채권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대우	원 칙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
	특별 항목	핵심인력 이행의무조건 민영화 독점 및 공기업 투자유인 기업관행
투자보호	원 칙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완전하고 항시적인 보호와 안전제공
	각 항	수용, 분쟁으로부터 보호, 송금, 대위에 관한 조항
분쟁해결절차	국가 대 국가	협의를, 조정, 화해, 중재(중재위원회)
	투자자 대 국가	협상, 협의, 중재(법원, 행정위원회, 합의된 절차,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UN의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절차,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절차)
예외규정	일반적 예외	국가안보, 국제평화와 안보유지, 공공질서 유지
	일시적 위반	국 체 수 지
	국 별 유 보	각 국 목 록
기타 문제	조세, 금융서비스, 환경, 의무조건의 상충, 다국적 기업에 관한 지침	
비회원국 가입	개방, 원하고 능력있는 경우	
기타 협상중인 사안	지방정부, 문화, 노동, 국외법적용, 경제통합체 문제	

*자료 : 황진우(1997), 'OECD 다자간투자협정과 우리의 대응', 한화경제 5월호, 한화경제연구원, p.29.

〈표 2〉 양자간 협정과 MAI의 투자보호관련 주요 규정 비교

	양자간 협정	MAI
투자자의 정의	· 계약국 국적의 자연인 및 계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협회, 조직 등	· 계약국의 영주권자 포함 · 회사의 형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시 : 정부소유 및 통제기업의 포함, 파트너쉽, 합작투자기업, 지점 포함
투자의 정의	· 모든 형태의 유무형의 자산으로 동산 및 부동산, 회사 주식, 지분, 채권, 금전적·경제적 가치를 갖는 행위청구권, 각종 지적재산권, 양허권 등	·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자산 - 각종 형태의 회사, 터키, 건설 및 관리 계약생산 및 수입분배 계약 등과 이에 따른 권리, 양허·인가·허가권 등을 명시
일반적 대우	· 자국의 법규정에 따라 투자 허용 · 공정·공평한 대우 및 투자의 보호 · 투자의 관리, 사용, 향유,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의 법규정에 따라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중 유리한 대우 적용	· 설립, 취득, 확대 등과 같은 설립전 단계에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의 적용 · 법적차별 및 사실적차별도 금지
수용 및 보상	· 수용 및 국유화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조치 금지. · 공공목적, 비차별적 방식, 적법한 절차, 보상의 조건하에 허용 · 보상은 신속, 적절, 유효해야 함. · 수용직전 수용재산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따른 보상. 수용일부터 보상일까지 정상적인 이자의 지급 · 보상은 충분히 현금화될 수 있어야 하고 보상금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 보상은 시장기준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 · 보상금 송금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음.
분쟁으로부터의 보호	· 전쟁이나 무력충돌, 내부소요, 국가긴급사태 등으로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함.	· 투자유치국의 군 또는 정부에 의한 투자의 징발, 꼭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의 군 또는 정부에 의해 상실된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시의 보상 규정 적용
송금	· 투자원금 및 보충자금, 수익, 이자, 배당금, 투자의 매각 또는 청산대금, 투자관련 채무의 변제대금, 사용료, 수수료, 투자관련 투자국 고용인의 소득 등 대상 · 자유태환통화에 의한 지체없는 송금 · 송금일의 공정시장환율 적용 · 송금은 투자유치국 법규정에 따름	· 보상금, 분쟁해결의 결과로 인한 지급금도 대상에 포함됨 · 자유사용/태환통화에 의한 송금 * 외환시장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의 SDR 환산비율을 환율로 적용 · GATT1994에 따른 물품수익의 송금 제한을 허용함 · 송금의 보고, 법적소송에서의 판결 등 합법적 목적 충족을 위한 송금의 제한 허용
대위 변제	· 투자자의 정부 또는 지정기관이 비상업적 요인으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 변제자가 투자자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승계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음.	· 비상업적 위험만을 대상으로 할 것 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투자자對국가간 분쟁관련규정을 삽입 · 보증계약 등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투자유치국은 변론, 반소, 상쇄권을 주장해서는 안됨.

* 자료 : 김관호(1996),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양자간투자협정과 MAI의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71-75.

3. MAI의 국내 파급효과

3.1 국내금융·자본시장 파급효과

MAI의 국내금융·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1.1 MAI의 순기능적 측면

- ① MAI 가입을 통해 각종 투자관련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과 투자의 자유화로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가입 사실 자체로서도 우리의 투자제도가 투명하고 신뢰성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 ②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투자에 비해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많은 우리 나라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의 불합리한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선진국기업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민영화, 독점, 이행의무 등 OECD 자유화규약에 없는 새로운 분야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 ③ 국내기업의 투자수요를 외국의 값싼 자금으로 충족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신용도가 제고되어 기업의 금리 부담은 더욱 완화되고, 금융서비스의 개선으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금의 유입으로 인하여 국내자금시장의 여력이 확대되고 국내금리가 하락함으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무역신용 및 현금차관 도입에 따른 규제완화로 국내증권시장이 선진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국내금리를 하락시키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⑤ 인수·합병(M&A)은 기업성장을 위한 효과적 리스터럭처링(restuructring)의 수단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기술, 생산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기업을 경쟁적 체질로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²⁾

3.1.2 MAI의 역기능적 측면

- ① MAI는 선진국에 유리한 협정이다. 투자활동에 필요한 핵심인력의 체류와 노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의 이동에 관한 언급은 없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은 이미 축적된 기술 및 자본과 경영기법으로 다자간 투자협정을 통해 조성되는

2) 한국산업은행(1997), 'MAI가 국내 M&A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경제 제73호, p. 56.

- 환경을 활용하여 많은 편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기업의 경우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국내자본의 유출과 외국인자본의 투자 철수로 인하여 경제적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 ②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낮은 우리 나라의 은행 등 금융산업의 충격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국계금융기관의 국내신규진출이 완전 자유화될 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모든 차별적 행위를 금지해 사실상 동등한 경쟁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③ MAI의 투자대상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에도 투기성단기자금, 즉 핫머니의 유출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OECD 가입협상과정에서 이를 유보했던 우리의 경우 부담을 안게 된다.
 - ④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이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종도 선진국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므로 경쟁압력이 가중된다. 국내기업들은 그동안 융통성있는 법규해석이나 재량, 행정규제에 의해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혜택을 누려왔던 '국적기득권'을 박탈 당하게 된다. 나아가 선진기업의 경우 짠 금리의 본국자본을 들여다 국내시장에서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업체로서는 국내시장에서도 오히려 불리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역차별' 현상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 ⑤ 기업의 중장기투자 기피와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M&A의 성행은 국내경영자들로 하여금 경영권 유지에 집착하고, 주가 상승 등 단기적 목표를 중시하여 기술개발 등 기업경쟁력의 원천인 중장기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M&A를 방어하기 위하여 대량의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 ⑥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제소자격을 인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의무화한 분쟁해결절차 때문에 제소가 빈발할 것이다. 다만 제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부문 등에서는 제소 이전에 양국 통화당국간의 사전협의절차를 두는 등의 제소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규정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 ⑦ 국내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지배가 늘어나면 국가경제의 발전 방향과는 무관한 기업활동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력이동의 자유화가 향후 병행된다면 고용 등의 문제와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기업의 소유구조가 모기업이나 중핵기업 위주로 이루어진 만큼 모기업이나 중핵기업을 대상으로 M&A가 발생할 경우 계열기업 전체가 쉽게 외국인 기업의 경영지배권에 흡수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외국인에 대한 국내투자한도가 늘어날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기업 경영권을 대상으로 한 머니게임이 성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2 해운·선박금융시장 파급효과

우리 나라 대부분의 해운기업은 국내금융시장의 자금 공급능력 부족, 정부의 선박금융에 대한 통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 등으로 선박확보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해운선사들이 선박확보를 위해 이용하는 주요 금융원천은 외국의 금융선에 의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자금이 주를 이루며 기타 리스자금, 한국산업은행의 계획조선자금, 한국은행 보유외화,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자기자금에 의한 금융 등을 꼽을 수 있다. 계획조선금융은 금리 및 용자비율면에서 외국금융조건보다 불리함에 따라 해운 조선 연계육성을 위해 강구된 계획조선사업이 사실상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³⁾

우리 나라의 해운시장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OECD와 WTO, 쌍무협정 등을 통해 개방된 상태이다.

〈표 3〉 OECD와 WTO의 해운관련부분 내용 비교

구 분	OECD의 해운관련 내용	WTO의 해운관련 내용
해운관련규약 담당기관	전문분야별 26위원회 중의 하나인 해운위원회	서비스교역이사회(GATS)산하의 해상운송서비스협상단
해운관련규약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회원국 해운정책의 공동원칙에 관한 권고 기준미달선박에 관한 권고 동력역외선박에 관한 지침 정기선해운경쟁정책 지침 공동해운원칙에 관한 양해각서	해상운송서비스협상에 관한 부속서 해상운송서비스협상에 관한 결정 ※ 부속서 또는 결정에는 해운관련 자유화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후속협상분야, 협상원칙, 협상시한 등이 명시됨
자유화원칙	점진적 자유화/내국민대우/무차별적용	점진적 자유화/내국민대우/무차별적용
협상 분야	국제해상운송(복합운송포함)/항만사용/해운관련 보조서비스/해운관련투자	국제해상운송(복합운송포함)/항만사용/해운관련 보조서비스/해운관련투자
협상 방법	네거티브(Negative) 방식 ※ 규약의 자유화대상 중 유보사항 열거	항목선정은 포지티브(Positive), 자유화내용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 ※ 협정상 자유화 대상 및 수준에 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

*자료 : 임종관(1994), 「OECD 해운정책과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해운산업연구원, p. 54.

그러나 OECD의 양대 자유화규약이나 해운관련 권고 등의 내용의 경우 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회원국의 경제여건에 따른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기여도는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⁴⁾

다음은 양대자유화규약 중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해운관련 부분이다.

- ① "한 회원국의 거주자에게 다른 회원국의 거주자가 제공하는 국제해상운송 관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무제한적으로 부여하려는 의도이다."
- ② "회원국의 해운정책은 자유·공정경쟁원칙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해상운송에 관련된 거래 및 이전의 자유가 외환통제조치, 자국선박 선호법규, 정부 또는 준정부기관의 자국선박 우대조치, 무역협정상의 해운관련 우선조항, 운송선박의 국적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출입면허제의 운용, 차별적인 항만규정이나 세제조치 등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3) 마문식(1995), 「금융제도의 개방과 선박금융제도 개선방안」, 해운산업연구원, p. 69.

4) 임종관(1994), 「OECD 해운정책과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해운산업연구원, pp. 19 ~ 21.

된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상업 및 해운관행과 절차가 국제무역에 수반되어야 하며 통상적인 상업적 고려만이 선적의 방법과 국적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국제운송에 관련되는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은 물론 항만이용, 복합운송, 운송관련 금융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전면적 개방 및 자유화정책을 추진해 갈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 개별회원국의 차별정책들을 점차 개선시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경우 규약의 본문에서나 부속서의 자유화 대상항목에 해운관련 부문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산업에 관련되는 자본이동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운분야도 적용의 대상이 된다. 즉 직접투자, 유가증권거래, 신용거래, 외환거래 등에 대한 본문의 자유화 원칙이나 부속서의 자유화대상항목은 해운과 관련되는 한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나 국내인의 해외직접투자 등은 해운부문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다.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국내인의 해외투자문제도 포함하고 있어 우리 나라 해운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서 MAI가 발효되면 확실한 투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MAI가 국내해운기업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 ① 우리 나라 해운기업은 제한적인 선박 확보를 위한 금융원천에서 보다 다양한 조건으로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② 우리 나라의 국제신용도가 높아지게 되어 해운기업의 평균해외차입금리가 낮아져 보다 유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선박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내해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선박금융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③ 국내금융시장에서의 역외금융을 통한 선박확보자금조달 가능성은 외국금융기관들의 영업전략과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 ④ MAI의 일반적 대우의 경우 내국민대우가 투자유치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므로 국내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보호나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 ⑤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해운기업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개방 확대와 우호적 M&A 허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⁵⁾
- ⑥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인하여 불가능하였던 경쟁력 우수한 해외 해운기업의 국내투자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지사 설립 등으로 국내활동이 강화되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 ⑦ 해운기업의 재무구조 안정을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적정 유지하는 운용방법이 요구되는데 대규모 핫머니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안정적인 재무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 ⑧ 금리, 환율 등의 경제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산 및 부채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환차손 등 영업외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5) 다국적기업의 불합리한 M&A형 직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M&A시장이 육성되어 국내기업이 방어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내부경영통제시스템 구축으로 가능할 수 있다. 원활한 내부경영감시활동은 기업경영의 변화를 추구하는 조기경보의 역할을 함으로써 방어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자유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상치되므로, 기업 스스로가 회사정관으로 외국인투자를 일정분으로 제한하는 등 자율적 방어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은행, 전계문, 산업경제 제73호, p. 59.)

이에 정부에서는 해운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하여 우리 나라 해운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MAI 발효는 정부의 해운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 제약을 동반하지만 코스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MAI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국내해운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 ① 선원비 및 금융·세제비용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선박등록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는데⁶⁾, 우리 나라의 경우 1997년 7월부터 동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조세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시행의 취지가 살아나고 그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 ②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한도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 ③ 정기선 운송의 웨이버제도는 우리 나라 선박에 의한 화물운송을 우선시하여 외국선사들의 우리 나라 해운시장 접근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여러 나라와 체결한 해운협정 등에 의하여 적용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는 그 실효성이 많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실효성은 약하면서 해운규제국이라는 이미지만 주는 제도는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⁷⁾
- ④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나라 선사들의 자율적 경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⑤ 부정기선 운송의 지정화물에 대해서는 외국의 개방압력이 강력함을 감안할 때 전면 유보하기 어려우므로 2~3개 화물만 유보하는 부분유보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⑥ 외국의 수출신용에 대한 국적선사들의 이용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조선산업의 보호를 위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국적선사들의 해외신조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어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조선소에 자유롭게 신조선을 발주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이 요청된다.
- ⑦ 우리 나라 해운기업의 경우 선박 확보, 자금 조달 및 인력 동원 등에 대한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보다 저렴한 자금으로 선박을 확보하여 적정수준의 선원 노동력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해운기업 스스로도 국내시장 방어형에서 해외시장 개척형으로 전환, 경영의 세계화를 추진하여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이겨 나가야 할 것이다.
- ⑧ 최근의 대형선사간 흡수·합병추세는 기업의 규모와 영업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서비스 개선과 아울러 원가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⁸⁾ 컨테이너해운시장에서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형태의 대형선사 출현은 저운임 시대에 컨소시엄체제로는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세계 해운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소선사들은 이러한 MAI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상호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6) Tae-Woo Lee(1996), 'Flagging Options for the Future: A Turning Point in Korean Shipping Policy', *Maritime Policy & Management*, Vol. 23 No. 2, pp. 181~ 183.

7) 임중관, 전게서, p. 58.

8) 이태우 외(1997), '세계 주요컨테이너 해운기업의 전략적 제휴의 현황과 그 생성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학회 '97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 p. 80.

4. 결 론

본문에서 MAI의 내용 및 그 파급효과, 특히 우리 나라 해운기업에 미칠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MAI는 국제투자에 대해 각국의 규제조치들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계경제의 범세계화를 완성하기 위한 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정이다. 따라서 투자대상범위가 경제적 가치를 갖는 모든 자산이며, 투자와 관련된 광범위한 행위 및 권리를 투자로 규정하여 국적을 따지지 않고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MAI는 세계시장의 통합과 무한경쟁이 전개되는 국제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함께 가져다 준다.

발달된 선진경영기법을 가진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고용이 늘어나고, 각종 투자 관련 규제의 완화와 경쟁 촉진으로 경제 전체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증권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우리 해외투자기업의 경우 선진국의 불합리한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보호막의 상실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경쟁력있는 국내기업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내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나 경영권의 위협, 특히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낮은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충격도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조건의 해외자금의 조달과 선박금융의 이용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해운기업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개방 확대와 우호적 M&A 허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우수한 해외해운기업의 국내 활동 강화로 해운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대규모 핫머니의 빈번한 유출입으로 인해 해운기업의 안정적 재무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환차손 등 영업외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MAI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해운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를 완화하여 국내해운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MAI에 대비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 실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한도규제 완화, 정기선 운송의 웨이버제도의 철폐,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자유화, 부정기선 운송의 지정화물의 부분유보방안 실시, 외국의 수출신용에 대한 국적선사들의 이용 허용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의 대형선사간 흡수·합병추세가 새로운 형태의 기업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국내중소선사들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상호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 나라 해운기업은 MAI식 신경제질서를 해외투자여건을 개선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본과 인력, 원료 등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해 자체경쟁력을 높이는 기업만이 MAI시대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문 문헌〉

1. 김관호(1996),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양자간투자협정과 MAI의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김정훈(1995), 「OECD 다자간조선헌정 관련 세계 주요조선국의 최근동향 및 과제」, 수은조사월보 11월호, 한국수출입은행.
3. 마문식(1995), 「금융제도의 개방과 선박금융제도 개선방안」, 해운산업연구원.
4. 부산발전연구원(1996), 「OECD 가입에 따른 부산의 대응방안」.
5. 오승구(1996), 「OECD 가입- 국제화」, 삼성경제 9월호, 삼성경제연구소.
6. 유득환(1996), 「OECD 가입과 한국의 무역」, 월간 무역 11월호, 한국무역협회.
7. 이정연(1997), 「OECD 가입이후 무역정책」, 국회보 2월호, 국회사무처.
8. 이태우 외(1997), 「세계 주요컨테이너 해운기업의 전략적 제휴의 현황과 그 생성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학회 97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
9. 이태우 외(1996), 「대한통운(주)해운부문 중장기발전계획 최종보고서」, (재)한국해상교통정책연구소.
10. 임종관(1994), 「OECD 해운정책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해운산업연구원.
11. 정문종(1996), 「OECD 가입에 따른 자본·금융시장의 개방과 정책과제」, 현안분석 제135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2. 정봉민(1997), 「1997년 해운시장 여건변화와 해운업계의 대응」, 해운산업연구 1월호, 해운산업연구원.
13. 조계석(1995), 「OECD 가입과 우리 나라 해운산업의 전략」, 해운산업연구 12월호, 해운산업연구원.
14. 한국산업은행(1997), 「MAI가 국내 M&A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경제 제73호.
15. 황진우(1997), 「OECD 다자간 투자협정과 우리의 대응」, 한화경제 5월호, 한화경제연구원.
16. OECD(1996),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Progress Report by the MAI Negotiating*.
17. OECD(1997),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Consolidated Texts and Comments*.
18. Tae-Woo Lee(1996), *Shipping Developments in Far East Asia: The Korean Experience*, England: Avebury.
19. Tae-Woo Lee(1996), 「Flagging Options for the Future: A Turning Point in Korean Shipping Policy」, *Maritime Policy & Management*, Vol. 23 No. 2.